#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23일 경제산업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9월 13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9월 13일

다. 상정일자

- 제31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  -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(2024, 9, 23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박상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)

#### 가. 개정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자 귀책 배상기준을 명시하여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.
- 상위법령과 상반되는 조항 삭제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여가캠 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관리자의 정의 개정 및 수탁자 정의 삭제(안 제3조)
- 사용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 가정 관련 조항 수정(안 제7조제1항제2호카목)
- 사용료 반환에 관한 소비자 보상권 침해 규정 개정(안 제10조)
- 시설 사용권의 전대 금지 규정 삭제(안 제12조)
- 관리·운영의 위탁 시 협약서 공증 의무 조항 삭제(안 제15조제2항)
- O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자구 수정

## 3. 관련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〈별표 2〉26. 숙박업(1개업종)

-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  -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가 운영중인 국민여가캠핑장의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관리자(포항시) 귀책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코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,
  - 검토결과, 국민여가캠핑장 사용자의 소비자 보상권 보장을 위해 공정 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권고안을 반영하고, 그 외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증진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, 조례의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  -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- 6. 토론의 요지 : 없 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